

평택-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(3차)변경실시 협약



2020. 8. 18.



국 토 교 통 부
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

국토교통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평택-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자 ‘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’(이하 “최초 실시협약”이라 한다), 2009년 12월 30일자 ‘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’(이하 “1차 변경협약”이라 한다) 및 2015년 4월 30일자 ‘평택-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(2차)변경실시협약’(이하 “2차 변경협약”이라 한다)을 각각 체결하였다(이와 같이 최초 실시협약 체결 후 1차 변경협약 및 2차 변경협약으로 변경된 실시협약을 가리켜 이하 “기존 실시협약”이라 한다).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출자자변경, 자본구조변경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에 따른 3차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기존 실시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2020년 8월 18일에 이 (3차)변경실시협약(이하 “이 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정의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선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기존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2조 사업수익률

기존 실시협약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.98%(세후 4.48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2조의 1(법인 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.72%(세후 4.26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2조의 1(법인 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 통행료 결정 및 조정

기존 실시협약 제5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<p>④제3항에도 불구하고, 2015년 이후 2033년까지의 연도별 통행료는 3년 단위로 조정하며, 직전 통행료 대비 통행료 상승률은 6.12%를 초과할 수 없다. 실시 협약 상 추정 물가지수변동률(연 3.00%)이 실제 물가지수변동률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상의 세전실질수익률과 실제로 산정한 세전실질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경우 2033년 이후 최초의 통행료 조정 시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며, 세부적인 정산방안은 별표12-3(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정산)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④제3항에도 불구하고, 2015년 이후 2033년까지의 연도별 통행료는 3년 단위로 조정하며, 직전 통행료 대비 통행료 상승률은 6.12%를 초과할 수 없다. 실시 협약 상 추정 물가지수변동률(연 3.00%)이 실제 물가지수변동률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상의 세전실질수익률과 실제로 산정한 세전실질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경우 2033년 이후 최초의 통행료 조정 시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며, 세부적인 정산방안은 별표12-2(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정산절차)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제4조 통지

기존 실시협약 제8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<p>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: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(중앙 동 1번지)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: 02-2110-8357 팩스 : 02-504-9160</p> <p>2.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: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-1 안양건설타워 1607호 전화 : 031-440-9542 팩스 : 031-440-9546</p>	<p>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: 국토교통부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참조: 도로투자지원과장 전화 : 044-201-3897 팩스 : 044-201-5591</p> <p>2.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: 제이서해안고속도로(주)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 고속도로 21 참조: 총괄본부장</p>

당 초	변 경
	전화 : 031-494-0370 팩스 : 031-494-0371

제4조 부록의 변경

기존 실시협약 별표2, 별표7, 별표8, 별표11, 별표12, 별표12-1, 별표14를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, 별표2, 별표3, 별표4, 별표5, 별표5-1, 별표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.

제5조 기존 실시협약과의 관계

기존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6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(서명란은 다음 장에)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아래 기재 일자에 각자 자신의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이 변경실시협약 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8월 18일

대한민국
국토교통부장관 김현



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
대표이사 오혁수

